

#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7. 4.

발 의 자 : 광영교의원 외 5인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 공포(2007. 5. 11 법률 제8423호)됨에 따라 조례중 개정된 법률과 관련 있는 조항의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의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3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 38조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법 [전부개정 2007.5.11 법률 8423호]

제38조 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【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

## 찬 성 의 원 명 단

찬 성 의 원	서 명	비 고
곽 영 교	곽영교	
김 희 훈	김희훈	
김 학 유	김학유	
오 영 세	오영세	
전 민 항 배	전민항배	
송 재 용	송재용	